# 강사 임용 등에 관한 규정

## 제1장 총 칙

- 제1조(목적) 이 규정은 학교법인 동명문화학원 「정관」(이하 '정관'이라 한다) 제37조제6항에 의거, 동명대학교(이하 '본 대학교'라 한다) 강사의 자격, 임용 및 처우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- 제2조(정의) 강사는 교과목의 강의 및 교과지도를 위해 임용된 자를 말한다.
- 제3조(자격) ①「대학교원 자격기준 등에 관한 규정」에 따른 강사의 자격을 충족하는 자로 한다. ② 교육경력 및 연구실적 환산율은「교원인사규정」제18조제1항의 <별표 1> 에 의한다.
- 제4조(결격사유) 「국가공무원법」제33조의 결격사유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본 대학교 강사로 임용될 수 없다.

#### 제2장 임용

- **제5조(정년)** 강사의 정년은 만 65세로 한다. 다만, 정년에 도달한 강사는 임용기간 만료전이라도 그 정년이 달한 날이 속하는 학기의 말일에 당연 퇴직한다.
- 제6조(임용일) 강사의 임용은 3월 1일 또는 9월 1일자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. 다만, 제7조 제2항 또는 학사운영상 필요한 경우 임용일자를 달리할 수 있다.
- 제7조(임용기간) ① 강사의 임용기간은 1년을 원칙으로 한다. 다만, 임용기간이 학기 중에 만료되는 경우에는 그 기간이 만료되는 날이 속하는 학기의 말일을 임용기간의 만료일로 한다.
  -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학기 중에 발생한 교원의 6개월 미만의 병가·출산휴가·휴직·파견·징계·연구년(6개월 이하) 또는 교원의 직위해제·퇴직·면직으로 학기 잔여기간에 대하여 긴급하게 대체할 강사가 필요한 경우에는 1년 미만으로 임용할 수 있다.
  - ③ 재임용 하지 아니하기로 결정된 강사는 임용기간 만료일에 당연 퇴직한다.
- 제8조(강사신규임용심사위원회) ① 강사의 신규임용에 대한 심사 및 심의를 위하여 단과대학(이하 '대학'이라 한다)별로 강사신규임용심사위원회를 둔다.
  - ② 강사신규임용심사위원회는 학장이 임명하는 2인 이상의 관련 교원 또는 외부 전문가로 구성하다.

제9조(신규채용) ① 신규채용은 공개채용과 특별채용으로 구분한다.

- ② 공개채용은 기초심사, 전공심사, 면접심사의 단계를 거쳐 실시하되, 필요한 경우 기초심사와 전공심사를 통합하여 심사하거나 면접심사를 생략할 수 있다. 다만, 특정인을 대상으로 일부 심사를 생략할 수는 없다.
- ③ 제7조제2항의 경우 특별채용 할 수 있다.
- ④ 신규채용에 관한 세부내용은 따로 정한다.
- 제10조(강사재임용심사위원회) ① 강사의 재임용에 대한 심사 및 심의를 위하여 강사재임용심사 위원회를 둔다. (개정 2020.6.1.)
  - ② 강사재임용심사위원회는 당연직 위원인 <u>교무처장</u>과 총장이 임명하는 3인 이상의 임명직 위원으로 구성하며, 위원장은 교무처장으로 한다. (개정 2020.6.1., 2021.6.1.)
  - ③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해당 보직 재임기간으로 하고 임명직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, 연임할 수 있다. 다만, 보궐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.
  - ④ 강사재임용심사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, 출석위원 2/3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
- 제11조(임용) ① 강사의 임용기간, 강의시간, 임금(방학기간 중 임금 포함), 면직사유, 재임용 절차, 복무 등의 근무조건을 정하여 서면계약하여 임용한다.
  - ② 신규임용 기간을 포함하여 3년간의 재임용 절차를 보장하되, 3년의 기간이 만료되는 경우 재임용 절차 또는 신규임용 절차에 따르며, 이에 대한 세부사항은 따로 정한다.
  - ③ 재임용에 관한 세부내용은 따로 정한다.
  - 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재임용 하지 않는다.
  - 1. 재임용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때
  - 2. 계약으로 정한 면직사유 등에 해당한 때

## 제3장 복무 및 처우

- 제12조(장의시간) ① 강사의 강의시간은 학기별로 주당 6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. 다만, 총장이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주당 9시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강의할 수 있다.
  - ② 담당 강의시간은 매 학기 변경될 수 있다.
  - ③ 강의시간은 운영하는 교과목의 특성에 따라 강의시간을 일부만 인정할 수 있다.
  - ④ 제1항의 경우 정규 교육과정에 포함되어 학점이 인정되는 교과목에 한하며, 비교과 및 계절학기 강의시간은 포함하지 아니한다.
- 제13조(복무 및 처우) ①「사립학교법」, 정관 및 본 대학교에서 정한 제 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.
  - ② 교육자로서의 의무를 성실히 수행하고 품위를 유지하여야 한다.
  - ③ 재임용 절차가 보장되는 기간 내에 본인의 사정으로 사직하고자 하는 경우 학기가 시작되기 2개월 전(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1개월 전)까지 소속 학과(부)장에게 사직서를 제출하여야 한

다.

- ④ 국민연금, 국민건강보험, 고용보험, 산재보험, 퇴직급여의 적용은 관련법령에 따른다.
- 제14조(휴직)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휴직을 원하는 경우에는 휴직을 명할 수 있다. 다만, 제1호 내지 제4호의 경우에는 본인의 의사에 불구하고 휴직을 명한다.
  - 1. 업무상 부상·질병으로 인하여 장기요양을 요할 때
  - 2. 「병역법」에 의한 병역의 복무를 위하여 징집 또는 소집된 때
  - 3. 천재·지변 또는 전시·사변이나 기타의 사유로 인하여 생사 또는 소재가 불명하게 된 때
  - 4. 기타 법률의 규정에 의한 의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직무를 이탈하게 된 때
  - 5.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하여 필요하거나 여성교 원이 임신 또는 출산하게 된 때
  - 6. 만 19세 미만의 아동 청소년(육아휴직의 대상이 되는 아동은 제외한다)을 입양(入養) 하는 경우
- 제15조(임금) ① 임금은 담당 교과목에 대해 강의시간 뿐만 아니라, 강의를 계획·준비하고 수강학생의 학습지도·성적평가·성적입력·환류 등의 학사업무와 이에 부수되는 업무처리에 대한 대가를모두 포함하다.
  - ② 임금은 학기 단위로 산정한 후 학기 중 임금과 방학 중 임금으로 구분하여 지급하되, 이에 대한 세부사항은 따로 정한다.
  - ③ 계절학기 담당 교과목에 대한 강의료는 별도로 정한다.
  - ④ 기타 임금에 대한 세부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.
- 제16조(임용보고) 강사를 임용한 경우에는 「사립학교법」제54조제1항에 따라 관할청에 보고하여 야 한다.

## 제4장 퇴직 및 면직

제17조(당연퇴직) 「국가공무원법」제69조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연 퇴직한다.

- 제18조(면직사유 등) ① 계약기간 중이라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면직할 수 있다.
  - 1. 휴직기간이 끝나거나 휴직사유가 소멸된 후에도 직무에 복귀하지 아니하거나 직무를 감당할 수 없을 때
  - 2. 정직 이상의 징계나 직위해제 사유에 해당된 때
  -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학기가 종료되는 말일에 면직할 수 있다.
  - 1. 소속 학과(부)가 폐지된 때
  - 2. 담당 교과목이 폐지된 때
  - 3. 제7조제2항에 따라 강사 임용이 필요하여 임용한 후 임용기간이 만료된 때
  - 4. 재임용 기간 중 2회 이상 서면 경고를 받은 때

- 5. 기타 계약서에 정한 사유에 해당된 때
- ③ 제1항 또는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면직하는 경우에는 교원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.

## 제5장 보칙

제19조(기타) 이 규정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관련 법령에 따르며, 그 밖에 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.

부 칙

(시행일) 이 규정은 2019년 6월 27일부터 시행한다. 다만, 2019년 8월 1일 이후 신규 임용하는 강사부터 적용한다.

부 칙

이 규정은 2020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<u>부 칙</u>

이 규정은 2021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.